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9. 20 선고 2019가단386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9. 9. 2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5. 3. 24. 접수 제76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95. 3. 24.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7649호로

1995. 3. 23.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90만 원,채무자 A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(변경후: 주식회사비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.

나. 그러나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1995. 3. 23.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.

다. 이에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강산아

별지